

2020년도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9. 8.(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8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53건(안건번호 제2020-112081호~11257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12081호는 직접 링크를 제공하는 심의대상 게시물보다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 자체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법해석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85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59건(안건번호 제2020-2910호~2968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39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20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5개 안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 거절 사실이 없는 2개 안건, 동일 게시물을 중복으로 청구한 1개 안건(3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8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차 회의록 18 페이지에 자구 수정 의견을 주셨음. 전차 회의록 5쪽에 저작물명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이 해당 저작물을 신고한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물명은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3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

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9 쪽~2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Tokyo MX’,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니버설 픽처스’, ‘리틀빅픽처스’, ‘(주)NEW’, ‘롯데엔터테인먼트’, ‘위너브러더스코리아’, ‘넷플릭스’, ‘Adobe Systems Inc.’, ‘Microsoft Corp.’, ‘한글과컴퓨터’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위원, D 위원, C 위원, A 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85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12081 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D 위원: 댓글에 게시된 URL로 접속하게 되면 개인에게 부여한 ◆◆ ◆ 클라우드 접속하면 됨. 개인 클라우드에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불법임.
- 성원영 전문위원: 개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고 스토리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송의 요건을 충족함.
- B 위원: 검토보고서 각주 5번에 기재된 것처럼 지난 전체회의에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위치가 국내인 경우 직접 링크가 설정된 게시물에 대해서 의견이 같았으나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에 링크 게시물에 대해서 확고히 인식될 수 있도록 전달이 필요함.
- 성원영 전문위원: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대응팀에 불

법복제물이 저장된 네이버 클라우드 URL주소로 다시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음.

- C 위원: 저는 직접 링크를 설정해서 올린 게시물과 ◆◆◆ 클라우드 모두 개별적 요건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임.
- B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면 링크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에서 계속 심의를 요청하게 됨.
- C 위원: 보호원 내부에 있는 팀에 대한 운영은 보호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면 될 것임.
- B 위원: 지금까지 심의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프레임 링크를 설정한 행위에 관해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대법원은 직접링크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방조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형사사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정보라는 개념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를 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에서 보듯이 명백한 범죄행위의 혐의가 있는데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원천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링크를 설정하여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음.

- B 위원: 시정권고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입장이 있지만 행정지도로 볼 여지도 있음.
- C 위원: 처분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여기에서 핵심은 명확하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원천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하므로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하지 않겠다는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정보라는 개념에 불확정성이라는 것이 링크를 저작권 침해 정보로 평가 내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링크로 연결되었을 때 불법복제물이 있어야함. 만약에 불법복제물 원천을 제거해버리면 저작권 침해 정보로 평가 내지 판단할 수 없게 됨.
- C 위원: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되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되었다면 게시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 복구해달라고 구제신청을 해야 함.
저작권 침해자는 법을 회피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법은 한발 늦음.
- B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원천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해야하는 것임. 심의위원회에서 링크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했을 때는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원천 게시물이 해외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임. 심의위원회에서 링크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하니까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원천이 국내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 원천이 아닌 링크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C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해결방법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에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원천 게시물을 확인한 다음 링크 설정 게시물과 함께 심의를 요청하면 됨.

- D 위원: 예를 들어 링크를 설정한 클라우드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클라우드라면 장물을 파는 행위이고 링크를 설정한 클라우드가 본인 소유라면 장물을 소유한 것임.
두 가지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권리 구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함. 게시자는 시정권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링크를 게시했는데 원천 게시물에 불법복제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시정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해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면 게시자가 저작권 침해자라는 사실을 본문 및 댓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원천 게시물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링크 설정 게시물과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원천 게시물 각각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함.

- A 위원: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 자체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법해석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11208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가결: C 위원, 부결: B 위원, A 위원, D 위원)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12082호~11257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영화 '반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웹하드 사이트에서 19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해당 영화는 2020. 7. 15. 개봉했으며 2020. 8. 25. VOD를 출시했음. 반도를 탈출하기 위해 필사의 사투를 그린 영화로 네이버 시리즈on에서 14,900원에 구매 가능하며 2020. 9. 7. 기준 관객수는 3,810,645명임.

(SW 'Adobe Master Collection CS6 ~ CC 2020'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Adobe에서 Creative Cloud로 출시한 상품 중 acrobat pro, illustrator, photoshop을 모아놓은 것으로 Adobe 공식 홈페이지에서 acrobat pro는 월 17,600원, illustrator는 월 24,000원, photoshop은 월 24,000원에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동으로 인증되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추정됨.

(영화 '스나이퍼: 암살자의 최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웹하드에서 31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2020. 7. 30. IPTV를 통해서만 출시했고 네이버 시리즈on에서 1만원에 대여해서 볼 수 있음. 특수부대 출신 브랜드이 무역 협정 파기로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의 음모에 휘말려 음모의 배후를 잡고 협의를 벗기 위해 싸우는 영화임.

(만화 '근사한 남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30

포인트에 판매중임. 교보문고, 영풍문고에서 4,320원에 판매하고 있음.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12082호~11257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웹하드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2082호~11257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1208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12082호~11257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2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910호~2968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39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나머지 20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5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5개 안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 거절 사실이 없는 2개 안전, 동일 게시물을 중복으로 청구한 1개 안전(3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이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9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9. 15.

분과위원장 권현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